

2021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11차 회의 안건

- 회의일시: 2021. 12. 3.(금) 14:00
-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비공개 |
| 2 |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심의 | 비공개 |
| 3 |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비공개 |

【검토사항】

- | | | |
|---|---------------------------------|-----|
| 1 |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검토 | 비공개 |
| 2 | ‘전통농경방식(수리체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비공개 |

【보고사항】

- | | | |
|---|---------------------------------|----|
| 1 | 무형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보고 | 공개 |
| 2 |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사항 보고 | 공개 |

심 의 사 항

1.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2.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3.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2. '전통농경방식(수리체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회의자료 공개) 제2호에 따라 목록 공개

보 고 사 항

1.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입니다.

나. 추진경과

- (‘20년)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21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 TF 구성·운영

다. 주요내용

- 계획기간: 2022년 ~ 2026년 / 5개년
- 성 격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법정계획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
 -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라. 계획의 구성

- 비 전: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 목 표
 - 문화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상생
 -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
-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 미래를 여는 문화재 스마트 행정

2.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사항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의식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번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추진 경과

- ('21.2~3월) 문화재 전문가(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및 대국민 의견수렴
- ('21.3월)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 (단기) 공문서·보도자료·홈페이지 등에서 지정번호 삭제
 - (장기) 지정번호 사용 제한을 위한 지속적인 관계 부처 협의
- ('21.6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6~8월), 법제처 법안심사(8월~)
- ('21.6월~) 관계 부처 협의
 - 문체부(박물관·미술관 등), 교육부(교과서), 지자체(시도문화재 관련) 등
- ('21.10월)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다. 주요 내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행정서식 등에서 지정번호 항목 삭제
- 홈페이지·간행물 등에서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안내판 개선
 - 궁·능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통해 안내판에서 지정번호 삭제
-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계속

라. 향후 계획

- ('21.11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동일명칭 문화재에 대한 표기 방법 고시